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학생 급식 자원 의무화 등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29호)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74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고민정 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기현 의원안】

I. 제안경위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4

【고민정 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

3. 회부연월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

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김기현 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4.
3. 회부연월일 : 2024.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두 개정안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공통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고민정 의원안 (2201329)	김기현 의원안 (2201374)
<신 설>	제8조의2(영양·건강 증진 사업과 급식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2(급식에 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¹⁾과 「유아교육법」²⁾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1)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급식 모니터링, 급식 관리 등의 규정³⁾이 마련되어 있음.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바, 두 개정안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등교육기관에 급식 예산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려는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③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취지로 보임. 다만, 각 개정안 간 지원목적과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각 개정안 비교 >

구분	고민정 의원안	김기현 의원안
지원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목적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지원	-
지원방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학생 급식 경비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장으로부터 재정 여건 등의 의견을 듣고 지원 조치에 반영 가능	급식시설·설비 등을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 가능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영양·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교장에게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지원범위를 대학생 급식으로 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급식시설·설비 등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두 개정안 모두 지원수단,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최근 대학생에 대한 식비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⁴⁾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천원의 아침밥’⁵⁾ 사업을 시작하였음.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7%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답하고 91.8%가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하는 등 높은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⁶⁾, 상당수의 대학은 행·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임.

이에 동 사업의 주관부서인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24년에 식수 및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지자체와 교육부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사업집행을 가능하게 집행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⁷⁾

4) YTN, “‘착한 가격’ 학생식당, 고물가에 인상 불가피”, 2022. 10. 3.

UNN, “학생식당 가격 1년 전보다 20%↑... ‘밥 굶는 청년’ 늘어난다”, 2022. 10. 6.

대한급식신문, “혼자 사는 청년들, 절반 이상 ‘불규칙 식사’”, 2023. 1.31.

5)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이용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 순천향대를 시작으로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음.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보도자료, 2023. 3. 20.

7)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 참여, 총 234만 명에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5.8.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1. 내용 : 1천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가 식비 공동 지원
※ 1식 기준 : 학생 1천원 + 정부 2천원 + 학교부담금
2. 기간 : 3월 ~ 11월 30일
3. 부처별 역할
 - (농식품부) 주관 부처로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 ‘23) 233만 식, 단가 1천원, 25억원→ ‘24) 450만 식, 단가 2천원, 93억원
 - (지자체) 참여 및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대학 부담 경감 지원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교수	21개교	16개교	14개교	26개교	28개교	145개교	186개교
지원식수	27만식	37만식	12만식	35만식	49만식	233만식	450만식
예산	250백만원	400백만원	600백만원	500백만원	500백만원	2,501백만원	9,348백만원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예산 확보 등의 지원·관리를 의무화할 경우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 나아가 학업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예산 부담이 들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3) 17억원, 12개 지자체→'24) 35억원, 15개 지자체 (17개 지자체 중 부산, 세종 제외)
-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기준 완화

한편, 김기현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민정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의 수준, 법률 시행의 긴급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⁸⁾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두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 앞서 발의 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현황 >

(2024. 8. 현재)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을호의원	제2200625호 (2020.6.19.)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u>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u>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u> 하도록 함.

문 의 처

02) 6788-5193

8)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p.821, 2024.5.

“공포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 부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을 두는 사례가 많다. 한편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3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